

# 도보

제2580호 2009년 9월 18일(금)

선 람	기관의 장

## 규 칙

- 충청북도규칙 제2646호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3
- 충청북도규칙 제2647호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11
- 충청북도규칙 제2648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7
- 충청북도규칙 제2649호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자원예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1

##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09-241호 삼승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25
- 충청북도고시 제2009-242호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26
- 충청북도고시 제2009-24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27
- 충청북도고시 제2009-250호 광역도로망(도 협의대상 도로) 결정 고시······30
- 충청북도고시 제2009-251호 2015년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고시·32
- 충청북도고시 제2009-252호 토지세목고시··········36
- 충청북도고시 제2009-2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38
- 충청북도고시 제2009-254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40

##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9-653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49
- 충청북도공고 제2009-65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공고······50
- 충청북도공고 제2009-655호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51

## 시 군 행정

- △ 고 시
- 청주시고시 제2009-1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53
  - 청주시고시 제2009-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57
  - 청주시고시 제2009-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64

☞ 뒤쪽 이어서

회 람									
--------	--	--	--	--	--	--	--	--	--

**시군 행정**

△ 고 시

- 충주시고시 제2009-92호 충주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66
- 제천시고시 제2009-75호 제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68
- 단양군고시 제2009-17호 천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고시·69
- 단양군고시 제2009-18호 다리안관광지 조성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고시·71

△ 공 고

- 청주시공고 제2009-12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73
- 제천시공고 제2009-1181호 제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공고·75

**기 타**

-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577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76

**규 칙**

**충청북도 규칙 제2646호**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 정책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2. 위촉직 :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5명 이상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재직기간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은 주민이 청구한 당해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를 심의·의결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회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심의회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제출 실·국·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는 공포 또는 재의로 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을 입안한 실·과장은 법무통계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안부서에서는 도지사 또는 전결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이 실질적인 입안부서인 경우에도 관련 실·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된 조례안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국이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이나 실·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입안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정책기획관은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 요구
3. 규칙안 : 공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의 안 표 지 서 식 >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심 의 의 결 사 항
----------------------------

안 건 명

제 출 자	○○실장(국장)○○○
제출연월일	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1. 의 안 명 :

2. 제 안 이 유 :

3. 주 요 내 용 :

4. 의 안 전 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조례·규칙 개정시에 한함)

6. 관계법령 발췌 : 불임

7.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

8. 입법예고(기간 : ~ ) 결과 :

9. 기타 참고자료 : 불임

10. 제안자 의견 :

[별지 제3호서식]

공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조례명	
의결일	
이송일	
제출자	

검토의견

○ 적법타당성 여부

재의요구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6조, 제107조 관련이유

[별지 제4호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조례·규칙명	
의안번호	
입법구분	제정 (     ), 개정 (     ), 폐지 (     )
제출자	
주요내용	
의결일	년    월    일
의결내용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부결(     ), 심의보류(     ) 재의요구(     )
수정 의결시 수정 내용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p><b>제 회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b></p> <p><b>회 의 록</b></p>				
일 시	년 월 일			
장 소				
참석대상 위원		참 석 위원		불 참 위원
심의안건	○ 총 :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기타 심의의결안건 : 건			
회의 내용	별지와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제 회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p>				

#### □ 제개정 사유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9. 10. 2일부터 도지사가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심의회 당연직 위원에 소방본부장을 포함시켜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제개정 내용

- 심의회 구성(제2조)
- 위원의 임기(제3조)
- 심의회 회의소집 및 운영(제5조)
- 심의회 배석 및 출석발언자(제6조)
- 대리출석(제7조)
- 의안제출(제8조)
- 의안 합의(제9조)
- 심의결과 처리(제10조)
- 회의록 작성(제12조)

충청북도 규칙 제2647호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충청북도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점)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18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9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② 수의방법으로 충청북도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지정한다.

1.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2. 국외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 : 투자적격 이상
3.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4. 관내 지점현황
5.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금고업무 전산처리 능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예금의 우대금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하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항목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충청북도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2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9점) - 무수익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이익율(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3점)	25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계	18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계	19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 [ 별표 2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제1항 관련)**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점)****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 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점)**

-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단,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9점)
  - 무수익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이익율(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3점)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18점)****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1) 금융기관이 제출(제안)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2) 다만,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이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1) 금융기관이 제출(제안)한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을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2) 다만, 보통예금 금리가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대출금리 (4점)**

도지사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9점)****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1)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의 분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2) 다만,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도 및 시·군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1)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2)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제개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금고를 지정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 신설 (제2조)
  - 수의방법 :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국외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조사 평가 투자적격 이상 은행 등
  - 예금 우대금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하한선 제시 가능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신설 (제3조)
  - 세부기준 :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평가
  - 항목배점 : 순위간 점수편차 1점~0.2점 단,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점수편차는 0.5점~0.1점



## 충청북도 규칙 제2648호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1호 중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입주하는 기업으로써”를 “국내·외기업투자촉진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로 한다.

제5장 제목 중 “국내기업”을 “국내·외기업”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29조의2에 따른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 신청시기 및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제목 중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전근로자 정착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서비스업 보조금 신청서(제19조의2 관련)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사업개요	사업장소재지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업 종			
	사업내용(품목)			
	사업개시일			
	사업장	토 지		m <sup>2</sup>
	규 모	건 물	m <sup>2</sup> (임차면적)	m <sup>2</sup>
	종업원수			명
자 본 금			원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원
	건 축 비			원
	건물취득비			원
	기반시설설치비			원
	시설·장비설치비			원
	기타			원
건물임차료	임차료(년)			원
	임차보증금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18호서식]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청서(제22조제2항 관련)**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FAX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이전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전부문의 이전전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후 소재지		
기업 투자내용	투자금액	원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종업원	명	이전 종업원	명	
신규 종업원			명		
착공(예정)일			이전완료일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이전 종업원	명				
보조금 신청액	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도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 회사작성 1부

□ 재개정 사유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용어변경, 지원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재개정 내용

- 용어변경(제8조, 제20조)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 “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로 변경
-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절차(제19의2)
- 대규모 투자기업 이전근로자 정착금 지원 절차(제22조)
- 보조금 신청 서식 규정(별지 제17호, 제18호)

충청북도 규칙 제2649호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농어업·농촌사업”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 지원결정 통지서(제6조 관련)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지원을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지원사업명 :

2. 지원사업자 및 지원금액 결정액

○ 지원사업자 :

○ 지원결정액 :

3. 지원사업 내용 :

4. 지원 조건

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원금은 지원금 사용 후 30일 이내 정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의 여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개정 사유**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개정된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 내용**

- 제명 변경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 용어 변경
  - (당초) 농어업·농촌 → (변경)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 (당초)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변경)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고 시

충청북도고시 제2009 - 241호

**삼승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승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2. 사업의 구역 및 내용**

- 사업구역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천남리 일원
- 사업면적 : 80.0ha
- 사업내용

구 분	공 종	사 업 량
수 원 공	압반관정	Φ200mm, 2공, (저수조 : 50㎡ 2조)
도 로	농 로	포장 : 45조 7,930m(B=4.0m 포장폭=3.0m)
용수시설	송수관로	1조 400m (Φ65mm)
	급수관로	3조 1,437m (Φ50 ~150mm)
배수시설	배수로	3조 915m (개거)
	도로측구	L형옹벽측구 : 13조 1,634 m(콘크리트) U형 측 구 : 8조 643 m(Con'c,조립식개거) 소 계 : 21조 2,277 m

**3. 사업시행자 : 보은군수**

**4. 사업비 소요액**

○ 총사업비 : 2,341백만원 ('09년 1,171백만원, '10년 1,170백만원)

**5. 사업예정기간 : 2009. 9 ~ 2010. 12. 31 (2년)**

**6. 사업의 효과**

○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7. 기타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보은군 농축산과(☎043-540-333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충청북도고시 제2009 - 242호

##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2. 사업의 구역 및 내용

- 사업구역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일원
- 사업면적 : 145.0ha
- 사업내용

구 분	공 종	사 업 량
수 원 공	암반관정	Φ250mm, 6공, (저수조 : 50m <sup>2</sup> 6조)
도 로	농 로	포장 : 70조 16,585m(B=4.0m 포장폭=3.0m)
용수시설	송수관로	6조 2,839m (Φ50mm)
	급수관로	21조 13,594m (Φ25 ~ 200mm)
배수시설	배 수 로	수로관 : 1조 220m (0.4×0.4)

### 3.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 4. 사업비 소요액

○ 총사업비 : 4,325백만원 ('09년 2,371백만원, '10년 1,954백만원)

### 5. 사업예정기간 : 2009. 9 ~ 2010. 12. 31 (2년)

### 6. 사업의 효과

○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7. 기타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음성군 농정과(☎043-871-3396)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충청북도 고시 제2009 - 24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보전산지 해제 (임업용→준보전)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도엽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92필지	307,666	219,491	219,491	
1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11	13,029	92	92	NJ52-13-2-008
2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13-1	3,084	2,859	2,859	NJ52-13-2-008
3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13-3	1,202	1,202	1,202	NJ52-13-2-008
4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13-4	276	276	276	NJ52-13-2-008
5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14-6	804	747	747	NJ52-13-2-008
6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83-6	2,032	2,032	2,032	NJ52-13-2-018
7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85-3	298	298	298	NJ52-13-2-018
8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86-2	12,298	12,298	12,298	NJ52-13-2-018
9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87-4	4,947	4,947	4,947	NJ52-13-2-018
10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88-4	6,261	197	197	NJ52-13-2-018
11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88-7	1,329	110	110	NJ52-13-2-018
12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12	9,025	512	512	NJ52-13-2-008
13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14-2	3,636	3,636	3,636	NJ52-13-2-008
14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산1-1	6,092	1,026	1,026	NJ52-13-2-008
15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임41-2	952	952	952	NJ52-13-2-018
16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임65	1,213	1,017	1,017	NJ52-13-2-018
17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1	1,289	1,289	1,289	NJ52-13-2-008
18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2	7,537	6,148	6,148	NJ52-13-2-008
19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65-1	11,702	51	51	NJ52-13-2-018
20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67-1	6,545	109	109	NJ52-13-2-018
21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75-1	4,165	4,165	4,165	NJ52-13-2-018
22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76-1	5,564	5,564	5,564	NJ52-13-2-018
23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76-5	374	374	374	NJ52-13-2-018
24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77-1	154	154	154	NJ52-13-2-018
25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산5-1	34,314	749	749	NJ52-13-2-008 NJ52-13-2-017 NJ52-13-2-018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도업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점	해제대상	
26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155	4,426	4,426	4,426	NJ52-13-2-008
27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162	582	582	582	NJ52-13-2-008
28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180	291	291	291	NJ52-13-2-008
29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184-3	3,500	3,500	3,500	NJ52-13-2-008
30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190	185	185	185	NJ52-13-2-008
31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191	519	519	519	NJ52-13-2-008
32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256-6	288	288	288	NJ52-13-2-008
33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03	646	646	646	NJ52-13-2-008
34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04	183	183	183	NJ52-13-2-008
35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06-1	1,091	1,091	1,091	NJ52-13-2-008
36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11	436	436	436	NJ52-13-2-008
37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14-3	4,965	4,965	4,965	NJ52-13-2-008
38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25-1	4,526	4,526	4,526	NJ52-13-2-008
39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26-2	440	440	440	NJ52-13-2-008
40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29	4,301	4,301	4,301	NJ52-13-2-008
41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64-1	3,246	3,246	3,246	NJ52-13-2-008
42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64-6	1,997	1,997	1,997	NJ52-13-2-008
43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64-7	2,470	2,470	2,470	NJ52-13-2-008
44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64-8	148	148	148	NJ52-13-2-008
45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64-9	88	88	88	NJ52-13-2-008
46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64-10	88	88	88	NJ52-13-2-008
47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64-11	32	32	32	NJ52-13-2-008
48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97-1	684	532	532	NJ52-13-2-008
49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97-3	13	13	13	NJ52-13-2-008
50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500-2	306	306	306	NJ52-13-2-008
51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2-2	3,932	3,932	3,932	NJ52-13-2-008
52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3-6	329	329	329	NJ52-13-2-008
53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5-1	14,769	14,769	14,769	NJ52-13-2-008
54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5-9	243	243	243	NJ52-13-2-008
55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5-10	166	166	166	NJ52-13-2-008
56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6	10,305	10,305	10,305	NJ52-13-2-008
57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8-6	198	198	198	NJ52-13-2-008
58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9-4	4,882	4,882	4,882	NJ52-13-2-008
59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9-6	199	199	199	NJ52-13-2-008
60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9-8	51	51	51	NJ52-13-2-008
61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40-1	1,142	1,142	1,142	NJ52-13-2-008
62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40	2,428	2,428	2,428	NJ52-13-2-008
63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42	4,860	4,860	4,860	NJ52-13-2-008
64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185	8,443	8,443	8,443	NJ52-13-2-008
65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425-3	417	417	417	NJ52-13-2-008
66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33-5	2,395	2,395	2,395	NJ52-13-2-008
67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산41	2,380	2,380	2,380	NJ52-13-2-008
68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184-1	4,507	4,507	4,507	NJ52-13-2-008
69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256-1	36,140	36,140	36,140	NJ52-13-2-008
70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임256-2	4,380	4,380	4,380	NJ52-13-2-008
71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2-2	69	69	69	NJ52-13-2-008
72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2-3	28	28	28	NJ52-13-2-008
73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12-2	655	655	655	NJ52-13-2-008

일련 번호	소 재 지				면적(㎡)			도면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74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23-1	1,847	1,847	1,847	NJ52-13-2-008 NJ52-13-2-007
75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23-3	827	797	797	NJ52-13-2-007
76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191-1	240	240	240	NJ52-13-2-007
77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191-2	195	195	195	NJ52-13-2-007
78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191-3	61	61	61	NJ52-13-2-007
79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191-4	2,083	1,973	1,973	NJ52-13-2-007
80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191-6	754	754	754	NJ52-13-2-007
81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41	893	893	893	NJ52-13-2-007
82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42-1	5,851	5,851	5,851	NJ52-13-2-007
83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46	89	74	74	NJ52-13-2-007
84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47	198	198	198	NJ52-13-2-007
85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71	7,453	7,453	7,453	NJ52-13-2-008
86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73	298	298	298	NJ52-13-2-008
87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임27-1	681	549	549	NJ52-13-2-007
88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28-2	93	31	31	NJ52-13-2-007
89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74-5	2,380	2,380	2,380	NJ52-13-2-008 NJ52-13-2-007
90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75	5,355	5,334	5,334	NJ52-13-2-008 NJ52-13-2-007
91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산76-1	1,488	1,159	1,159	NJ52-13-2-007
92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임466-12	389	383	383	NJ52-13-2-00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표시 관계 도·서는 청원군 축산산림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

충청북도 고시 제2009 - 250호

## 광역도로망(도 협의대상 도로) 결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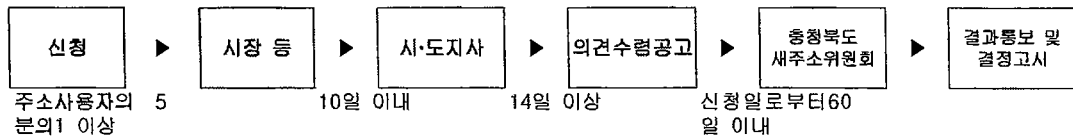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 다 음

#### 1.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43-220-4323 (FAX : 043-220-4319)

나. 주소 : (367-900)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 3.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km)	폭 (m)	시·군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m)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심의안 도로명	부여사유
1	30.7	15~25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석교육거리)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구방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청주시, 청원군	20	연속부여	단체로	독립운동가 단체 신채호 선생의 생가를 잇는 도로
2	11.1	15~40	청주시 상당구 내리동 (내리철거리)	청원군 오창읍 복원리 (복원교)	별도조서 참조	청주시, 청원군	20	연속부여	공항로	청주국제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33	9.6	5~15	영동군 심원면 단천리 (단천사거리)	유천군 청성면 표금리 (표금리배교고속도로)	별도조서 참조	영동·유천군	20	연속부여	단신표금로	영동군 심원면 단천리에서 유천군 청성면 표금리를 연결하는 도로
61	10.3	10~20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충북학생문화원삼거리)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장대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청주시, 청원군	20	연속부여	팔결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연결하는 팔결교 인용
62	35.1	10~20	청원군 오창읍 복원리 (복원교)	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두계교)	별도조서 참조	진천군	20	연속부여	생거전천로	진천을 대표하는 생거전천이란 명칭 사용
63	70.8	10~20	영동군 영동읍 부유리 (중앙정구장)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미원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영동·유천·보은·청원군	20	연속부여	남부로	남부3군을 연결하는 도로

충청북도 고시 제2009-251호

**2015년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2015년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1.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1,842,000	감) 10,000	81,832,000	100.00	행정구역 면적 조정	
도 시 지 역	계	12,781,000	-	12,781,000	15.61		
	소 계	2,766,000	증) 18,492	2,784,492	3.40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40,400	-	40,400	0.05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320	증) 4,824	112,144	0.14	
		제2종일반주거지역	2,456,640	증) 9,648	2,466,288	3.01	
		제3종일반주거지역	109,610	증) 4,020	113,630	0.14	
		준주거지역	52,030	-	52,030	0.06	
	상 업 지 역	소 계	247,600	-	247,600	0.30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47,600	-	247,600	0.30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 계	876,842	-	876,842	1.0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784,000	-	784,000	0.96	
		준공업지역	92,842	-	92,842	0.11	
	녹 지 지 역	소 계	8,870,458	증) 1,608	8,872,066	10.84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57,300	-	57,300	0.07	
자연녹지지역		8,813,158	증) 1,608	8,814,766	10.77		
미 지 정		20,100	감) 20,100	-	-		
비 도 시 지 역	관 계	69,061,000	감) 10,000	69,051,000	84.39		
	소 계	28,654,424	증) 2,057,234	30,711,658	37.53		
	보전관리지역	7,869,900	증) 728,251	8,598,151	10.51		
	생산관리지역	3,905,725	증) 1,093,315	4,999,040	6.11		
	계획관리지역	16,878,799	증) 235,668	17,114,467	20.91		
	농림지역	39,720,576	감) 1,381,234	38,339,342	46.86		
자연환경보전지역		686,000	감) 686,000	-	-		



■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증평읍 송산리 일원	미지정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4,824	200	▶ 도시지역내 잔여 미지정지에 대하여 기 결정된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도 부여
2			제2종일반 주거지역	9,648	250	
3			제3종일반 주거지역	4,020	300	
4			자연녹지지역	1,608	100	
-	증평군 일원	농림 지역	생산 관리지역	1,060,130	80	▶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중 농업·임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보전 관리지역	42,251	80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중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 관리지역	268,853	100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중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10,000	-	▶ 행정구역 면적 정정에 따른 면적 감소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관리지역	686,000	80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보강천 일원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보 전관리지역으로 세분
5	도안면 석곡리 일원	계획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33,185	80	▶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중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조성 예정 부지를 제외한 잔여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2) 행정구역별 관리지역 지정내역

① 총괄

구분	면적(㎡)		
	합계	증평읍	도안면
계	2,057,234	1,288,011	769,223
생산관리지역	1,060,130	583,038	477,092
보전관리지역	728,251	572,946	155,305
계획관리지역	268,853	132,027	136,826

② 증평읍

구분	소계(㎡)	증평읍				
		증천리	내성리	연탄리	미암리	사곡리
계	1,288,011	4,073	162	23,470	391,251	259,248
생산관리지역	583,038	3,586	-	-	-	51,118
보전관리지역	572,946	487	-	-	391,251	176,104
계획관리지역	132,027	-	162	23,470	-	32,026

구분	증 평 읍					
	용장리	덕상리	남차리	남하리	죽리	율리
계	67,170	3,404	16,067	49,098	1,116	472,952
생산관리지역	8,620	683	14,875	35,192	1,116	467,848
보전관리지역	-	-	-	-	-	5,104
계획관리지역	58,550	2,721	1,192	13,906	-	-

③ 도안면

구분	소계(㎡)	도 안 면		
		연촌리	송정리	광덕리
계	769,223	18,865	199,112	202,542
생산관리지역	477,092	18,865	183,320	172,852
보전관리지역	155,305	-	15,792	21,355
계획관리지역	136,826	-	-	8,335

구분	도 안 면			
	노암리	화성리	석곡리	도당리
계	14,656	82,323	34,907	216,818
생산관리지역	-	24,695	30,490	46,870
보전관리지역	-	57,628	-	60,530
계획관리지역	14,656	-	4,417	109,418

나. 준계획시설

1) 교통시설

①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도로	3,886	증평읍 연탄리338-2	증평읍 미암리113	일반 도로	4호 광장	충북고시제75호 ('94.610)
변경	대로	1	3	35	주간선 도로	3,909	증평읍 연탄리336-1	증평읍 미암리산41-3	일반 도로	4호 광장	충북고시제75호 ('94.610)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1-3	대로 1-3	▶ 변경 - 연장 : 3,886m → 3,909m 중) 23m	▶ 기 개설된 도로현황을 반영하여 선형조정

② 철도 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1	철도 (충북선)	일반 철도	증평읍 초중리 516-2 일원	도안면 광덕리 산2-4 일원	증평역 도안역	10,195	130,997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일반철도)	▶ 신설 - 연장 : 10,195m - 면적 : 130,997㎡	▶ 기존 철도(충북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철도)로 신규 결정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 : 충청북도청(균형정책과) 및 증평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
3. 관계도서를 충청북도청과 증평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북도고시 제2009-252호

## 토 지 세 목 고 시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장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중 도로확포장 공사 및 양수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 업 명 : 이류면 장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07. 4. 17 ~ 2009. 12. 31
3. 사업시행자 : 충주시장
4. 수용할토지 : 붙임과 같음

#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일련 번호	토지내역				소유자			소유자의 권리명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328-3	답	104	104	유원형	충주시 성내동 475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임차보증금 금8,176,840원	
2	348-3	답	223	223	유원형	충주시 성내동 475				

충청북도고시 제2009-253호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 고
변 경	지방도318호 (일죽-음성)	시점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28-4 종점 :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491	1.03	-	용산도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결정	

2. 사업시행기간 : 2009. 9. ~ 2010. 6. (공사준공일)

3. 사업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043-220-5441-4)

다. 공람내용 : 설계도서, 자금계획, 1/50,000지형도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마.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같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공람장소 비치)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사업목적 : 지방도 318호(일죽-음성)선 구간중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용산리  
지내에 도로확·포장 및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져함.

나. 위 치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용산리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법 제30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보조 간선	590	대로3-1 읍내리 825-1번지	북측지구계 용산리 1495번지	일반 도로	-	76.12.7	건고 제194호
변경	중로	1	1	20	보조 간선	590	대로3-1 읍내리 825-1번지	북측지구계 용산리 1495번지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1	12	20	보조 간선	356	북측지구계 용산리 1495번지	용산리 1491번지	일반 도로	-	-	도시지역밖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	중로1-2	- 경미한 변경 - 연장 : 590 - 폭원 : 20m - 면적 : 11,800㎡	용산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고시한 20m 폭원과 다소 차이가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로폭원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로1-12	중로1-12	- 신설 - 연장 : 356 - 폭원 : 20m - 면적 : 7,120㎡	용산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도시지역구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비치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법 제88조)

○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용산도로보행환경 조성사업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28-4일원	도로 (중로1-1) (중로1-12)	L=946m B=20.0m	L=1,030m B=20.0m	인 가 일 200 . .	6,000

마. 사업시행자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지(충주시 용탄동 1137-1)

성 명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 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과 같음

충청북도고시 제2009-254호

##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지방도318호	노선명	일죽~음성
접도구역 지정(변경) 구간	시점 :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40-4 종점 :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491 (L=0.4km)		
접도구역지정(변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도로보행환경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구간을 변경하여 장래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li> <li>○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을 방지</li> </ul>		

2. 접도구역의 지정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각 5.0m 범위 내

3. 위치도 : 1/50,000 지형도와 같음

4. 기타사항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같음하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비치하고 열람합니다.





표준 번호	소재지	읍	리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지번	소유자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적	양호면적	분할면적			분할수량	관내면적						주소	주 소			
30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6-6	326-6	전	30	30	30	30	30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용내리 700								
31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6-4	326-4	전	87	87	87	87	87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용내리 323-6			농업협조조합농회	근저당				
32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6-3	326-3	전	3,130	109	162	162	162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용내리 535-109			오두환	근저당				
33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7-1	327-3	전	2,400	97	146	146	146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용내리 353-11	태정@1901			박은희외1명	근저당			
34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8	328-2	전	3,199	356	353	353	353	1/2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무곡리 227			조성환	음성농협농조합	근저당		
35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8-1	328-3	전	230	94	95	95	95	1/2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신봉리 259			조성환				
36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0-3	330-3	전	152	152	152	152	152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무곡리 227			조성환	하이트백주주식회사	근저당			
37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1-3	331-6	전	1,095	287	290	290	290	1/2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상봉리 259			조성환				
38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1-1	331-5	전	906	126	190	190	190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용내리 239			이선화					
39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461-2	1461-7	구	18,378		247	247	247	농수산부						박영길					
40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5	335-2	전	620	19	29	29	29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용내리 10-135	3층		차원희					
41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4-2	334-4	전	947	459	472	472	472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용내리 239			박영길					
42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495	1495-1	도	4,859	3,852	3,845	3,845	3,845	전원부											
43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3-1	333-4	대	3,362	483	481	481	48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태희실업회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4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3-2	333-5	임	851	109	114	114	114	창주시	금진동	부영아파트	1004-602			차원희					
45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3-3	333-6	임	190	26	31	31	31	1/3	서울	관악구	신림동	90-48			한상래		농협협동조합농회	근저당	
46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55-2	355-3	전	1,633	540	563	563	563	1/3	용인시	죽전동	새티마을	현대홈타운 706-1701			한지림		농협협동조합농회	근저당	
47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40-4	340-8	대	6,112	94	100	100	100	1/3	용인시	죽전동	새티마을	현대홈타운 714-602			한지림				
48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40	340-11	장	9,486	240	249	249	249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태희실업회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9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60-2	360-2	임	142	142	142	142	142	1/3	서울	관악구	신림동	90-48			한상래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50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57	357-1	전	734	38	31	31	31	1/3	용인시	죽전동	새티마을	현대홈타운 714-602			한상래		농협협동조합농회	근저당	
51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40-7	340-10	대	928	33	37	37	37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신양리 149			이창수		하나은행	근저당		
52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40-6	340-9	대	8,740	13	14	14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2	서초래미안@	109-1602		박영화		하나은행	근저당	
53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58	358-1	대	1,322	170	161	161	16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2	서초래미안@	109-1602		박영화		하나은행	근저당	
54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59-2	359-2	임	393	393	393	393	393	창주시	성암구	우암동	373-4			이창수					
55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59-3	359-4	전	3,980	881	932	932	932	서울	종로구	기복동	176	신원가락(아)	1-508		김진희				
56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72-2	372-2	임	571	571	571	571	571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826			조성환				면적조정대상	
57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70-4	370-6	전	460	148	148	148	148	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4-15			김광순			
												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4-15			손동석			

일련 번호	소재지	읍	리	지번		지역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분할전	분할후		지적	요요면적	보유면적			리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8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1481-48	1481-87	담	6,351	95	92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03-93	곽윤덕			
59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0-2	370-5	전	1,088	372	보류	㎡	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84-15	김광순			연석조점예정
											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84-15	손동서			
60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1481-76	1481-88	전	776	36	16	㎡		음성군				
61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2-3	372-3	임	84	84	84	㎡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26	조찬경			미등기
62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3-4	374-4	전	448	14	미분할	㎡		음성군				
63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3-3	373-3	전	184	23	미분할	㎡		음성군				
64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1481-11	1481-11	전	84,174	27	미분할	㎡	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84-15	김광순			연석조점예정
65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2-1	372-4	전	354	354	보류	㎡	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84-15	손동서			
66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1470-1	1470-1	구	11,226	610	263	㎡		농수산부				
67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5	421-12	담	2,360	486	보류	㎡	1/3	서울 마포구 관악동 371 공덕상성@105-1909	허만형			연석조점예정
											1/3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0-15	허중수			
											1/3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5-2 현대@220-301	허만범			
68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1-2	371-2	전	492	214	216	㎡	1/2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6-2 삼구물 성지@711-503	이윤경			
69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1-1	371-5	전	177	177	보류	㎡	1/2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4	권광주			
											1/3	서울 마포구 관악동 371 공덕상성@105-1909	허만형			연석조점예정
											1/3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0-15	허중수			
											1/3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5-2 현대@220-301	허만범			
70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1-3	371-3	도	111	111	111	㎡		음성군				
71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371-4	371-4	도	397	397	397	㎡		음성군				
72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1491-1	1491-1	도	5,114	2,048	1,991	㎡		간월부				
73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9	421-9	도	232	232	232	㎡		음성군				
74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0-2	420-4	담	1,501	272	266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01-38	김안자			근저당
75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0-3	420-3	도	413	413	413	㎡		음성군				
76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6	421-13	담	61	38	40	3	㎡	1/2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6-2 삼구물 성지@711-503	이윤경		
											1/2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4	권광주			
77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3	421-11	대	678	327	331	107	㎡	1/3	서울 마포구 관악동 371 공덕상성@105-1909	허만형		
											1/3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0-15	허중수			
											1/3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5-2 현대@220-301	허만범			
78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10	421-10	도	151	151	151	㎡		음성군				
79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2	421-11	전	543	407	417	㎡	1/2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6-2 삼구물 성지@711-503	이윤경			
											1/2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4	권광주			
80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8	421-8	도	238	238	238	㎡		음성군				
81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7	421-17	대	660	49	74	74	㎡	1/2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6-2 삼구물 성지@711-503	이윤경		
											1/2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4	권광주			
82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1	421-1	담	43	43	43	㎡		음성군 음성읍 웅산리 421	백정기			

일련 번호	소재지	읍	리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지번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분할전	분할후		지적	영도면적	분할축적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83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419	419	전	40	40	40	40	음성군			
84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418-2	418-2	대	141	54	60	1/2	수원시 영동구 영동동 988-2 상구골 성지@711-508	이윤경		
										1/2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4	권광주		
85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418-1	418-1	도	14	14	14	14	음성군			
86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416-2	416-6	답	1,144	10	7	7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947	경기철		음성농업협동조합
87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114-1	114-5	전	307		1	1	음성군			
88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254-11	254-15	전	400		9	9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88-5	홍순구		
89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254-9	254-9	전	217		217	217	음성군 월남면 하당리 11-1	윤경수		
90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254-8	254-8	전	115		115	115	음성군			
91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3-6	323-21	대	722		6	6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3-6	건문신		
92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30-1	330-4	전	3,954		64	64	서울시 강남구 노원동 271-16	임병진		
93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40-5	340-12	장	457		1	1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42-9	태화심업(주)		
94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423-2	423-5	답	1,150		109	109	경기 수원시 인계동 210-28	장근현		
95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422	422-1	밭	605		123	123	경기 수원시 인계동 210-28	장근현		
96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416-3	416-7	도	169		2	2	음성군			
97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254-6	254-6	도	496		2	21	음성군 음성읍 상생리 151	최상복		

입원 번호	위치		지장 물건			토지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물건종류	수량	단위	성명	주소	
1	음성	음산	825-1	1	주	황용득	음성군 음성읍 음내리 730-1	
2	음성	음산	255	1	식	윤경수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11-1	
3	음성	음산	255	1	식	윤경수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11-1	
4	음성	음산	255	1	주	윤경수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11-1	
5	음성	음산	255	23	주	윤경수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11-1	
6	음성	음산	255	3	주	윤경수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11-1	
7	음성	음산	254-7	1	식	대성공업사	음성군 음성읍 음내리 115-1	
8	음성	음산	254-1	1	식	박성규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4-1	
9	음성	음산	254-1	1	식	박성규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4-1	
10	음성	음산	254-1	1	주	홍순구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88-5	
11	음성	음산	254-1	1	주	홍순구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88-5	
12	음성	음산	254-1	1	주	홍순구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88-5	
13	음성	음산	254-1	1	주	홍순구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88-5	
14	음성	음산	254-3	3	동	농업기술센터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6-3	
15	음성	음산	254-3	32	㎡	농업기술센터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6-3	
16	음성	음산	254-3	1	식	원불교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4-5	
17	음성	음산	254-3	2	주	농업기술센터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6-3	
18	음성	음산	253-6	1	식	농업기술센터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6-3	
19	음성	음산	253-6	20	주	조항주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3	
20	음성	음산	1479	3	㎡	박성규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4-1	
21	음성	음산	1480	1	식	박성규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4-1	
22	음성	음산	253-2	129	㎡	김용덕	음성군 음성읍 음내리 234-2	
23	음성	음산	253-2	1	식	조용주	음성군 음성읍 음산리 253	
24	음성	음산	253-2	15.6	㎡	김용덕	음성군 음성읍 음내리 234-2	
25	음성	음산	253-2	7.5	㎡	김용덕	음성군 음성읍 음내리 234-2	
26	음성	음산	253-2	4.5	㎡	김용덕	음성군 음성읍 음내리 234-2	
27	음성	음산	253-2	24	㎡	김용덕	음성군 음성읍 음내리 323-3	

일련 번호	위치			지장물건				토지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물건종류	수량	단위	성명	주소			
								주소	주소		
28	음성	용산	253-2	창고	8	㎡	김용덕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3-3			
29	음성	용산	253-2	영양(우리집식당)	1	식	이명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947			
30	음성	용산	253-2	담배판매권	1	식	이명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947			
31	음성	용산	253-2	간판	1	식	이명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947			
32	음성	용산	253-5	수도시설	1	식	조광주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253			
33	음성	용산	1479	가옥(화장실)	12	㎡	정일양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2-5			
34	음성	용산	1479	담장	18	㎡	정일양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2-5			
35	음성	용산	1479	가시오가피	3	주	정일양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2-5			
36	음성	용산	1479	대문	1	식	정일양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2-5			
37	음성	용산	1479	개나리	8	주	정일양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2-5			
38	음성	용산	1479	마울석	1	식	정일양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22-5			
39	음성	용산	253-1	울타리	28	㎡	최상혁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151			
40	음성	용산	322-2	복숭아나무	25	주	김홍기	충주시 용관동 305-2			
41	음성	용산	322-2	가죽	6.5	㎡	김홍기	충주시 용관동 305-2			
42	음성	용산	322-2	울타리	87	㎡	김홍기	충주시 용관동 305-2			
43	음성	용산	322-2	기타수목	10	주	김홍기	충주시 용관동 305-2			
44	음성	용산	322-2	대문	1	식	김홍기	충주시 용관동 305-2			
45	음성	용산	322-3	가옥	142	㎡	강영순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3-2			
46	음성	용산	322-3	수도시설	1	식	강영순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3-2			
47	음성	용산	322-3	영양(중앙슈퍼)	1	식	강영순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3-2			
48	음성	용산	322-3	담배판매권	1	식	강영순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3-2			
49	음성	용산	322-1	가옥	61	㎡	김영선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0	음성	용산	322-1	화장실	3	㎡	김영선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1	음성	용산	322-1	부속건물	40	㎡	김영선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2	음성	용산	322-1	관장	1	식	김영선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3	음성	용산	322-1	담장	17	㎡	김영선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4	음성	용산	322-1	수도시설	1	식	김영선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입원 번호	위치		지정 물건				토지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물건종류	수량	단위	성명	주소		
55	음성 용산	322-1	철나무	1	주	김영진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6	음성 용산	322-1	개나리	5	주	김영진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7	음성 용산	322-1	느티나무	1	주	김영진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8	음성 용산	322-1	기타수목	2	주	김영진	이천시 증포동 191-7 선경아파트 102-403		
59	음성 용산	323-2	울타리	40	㎡	한봉수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550-3		
60	음성 용산	323-2	대문	1	식	한봉수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550-3		
61	음성 용산	323-16	회양목	19	주	김종만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573		
62	음성 용산	325-2	산수유	16	주	김종만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573		
63	음성 용산	325-2	단풍나무	31	주	김종만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573		
64	음성 용산	325-2	주목	17	주	김종만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573		
65	음성 용산	325-2	기타수목	27	주	김종만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573		
66	음성 용산	326-2	자연석간판	1	식	송운섭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700		
67	음성 용산	326-2	조경석쌓기	21	㎡	송운섭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700		
68	음성 용산	326-2	주목	4	주	송운섭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700		
69	음성 용산	326-2	기타수목	14	주	송운섭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700		
70	음성 용산	327-2	활백나무	3	주	조권경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826		
71	음성 용산	330-3	골프장기둥	3	개	신경학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679-2 무지개아파트 807		
72	음성 용산	330-3	골프장 망	33	㎡	신경학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679-2 무지개아파트 807		
73	음성 용산	330-3	골프장간판	1	식	신경학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679-2 무지개아파트 807		
74	음성 용산	330-3	울타리	52	㎡	이영부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566		
75	음성 용산	331-2	느티나무	1	주	신춘집	음성군 음성읍 을내리 332		
76	음성 용산	1461	간판(총용사)	1	식	총용사	음성읍 을산리 454		
77	음성 용산	1461	간판(본가)	1	식	본가	음성군 음성읍 을산리 1481-38		
78	음성 용산	1461	간판(신춘집)	1	식	신춘집	음성군 음성읍 을산리 332		
79	음성 용산	1461	관정	1	식	신춘집	음성군 음성읍 을산리 332		
80	음성 용산	335	가옥	50	㎡	박영길	서천시 성북구 정동동 10-135 3층		
81	음성 용산	333-1	가옥	18	㎡	전인군	음성읍 을내리 885		
82	음성 용산	333-1	은행나무	3	주	태화실업(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일련 번호	위치		지정 물건			토지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물건종류	수량	단위	성명	주소	
83	음성 용산	1495	울타리	54	m	전인근	음성을 읍내리 885	
84	음성 용산	334-2	복숭아나무	12	주	차원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푸르지오@ 502-1703	
85	음성 용산	355-2	인삼경작	745		박선규	음성을 신천리 115-12	
86	음성 용산	330-3	은행나무	21	주	태화실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87	음성 용산	330-3	향나무	10	주	태화실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88	음성 용산	330-3	갯나무	3	주	태화실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89	음성 용산	330-3	두릅	6	주	태화실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90	음성 용산	330-3	가로등	5	개	태화실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91	음성 용산	330-3	관정	1	식	태화실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92	음성 용산	330-3	담장	145	m	태화실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2-9	
93	음성 용산	358	가죽	342	m <sup>2</sup>	이상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3-4	
94	음성 용산	358	담장	35	m	이상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3-4	
95	음성 용산	358	나무적재	10	m	이상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3-4	
96	음성 용산	1481-48	인삼경작지	242	m <sup>2</sup>	김학만	음성을 읍내리 576-9	
97	음성 용산	335	무속시설	1	식	이오복	음성을 읍내리 644-1	



공 고

충청북도 공고 제2009-653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 고
정보통신공사업 (제430079호)	주식회사아이앤이 대표 김 재 원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155(4층)	2009.9.10	신규등록

충청북도 공고 제2009-654호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제2009-1-충북-16호	희망청원평화봉사단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202-13	김경애	'09. 9. 9	·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사회일반에 관한 사업 등	286-9898	자치 행정과  신규등록

충청북도 공고 제2009-655호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1. 도로법시행령 제29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사계획의 내용 및 편입용지조서 등 관계도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1. 도로공사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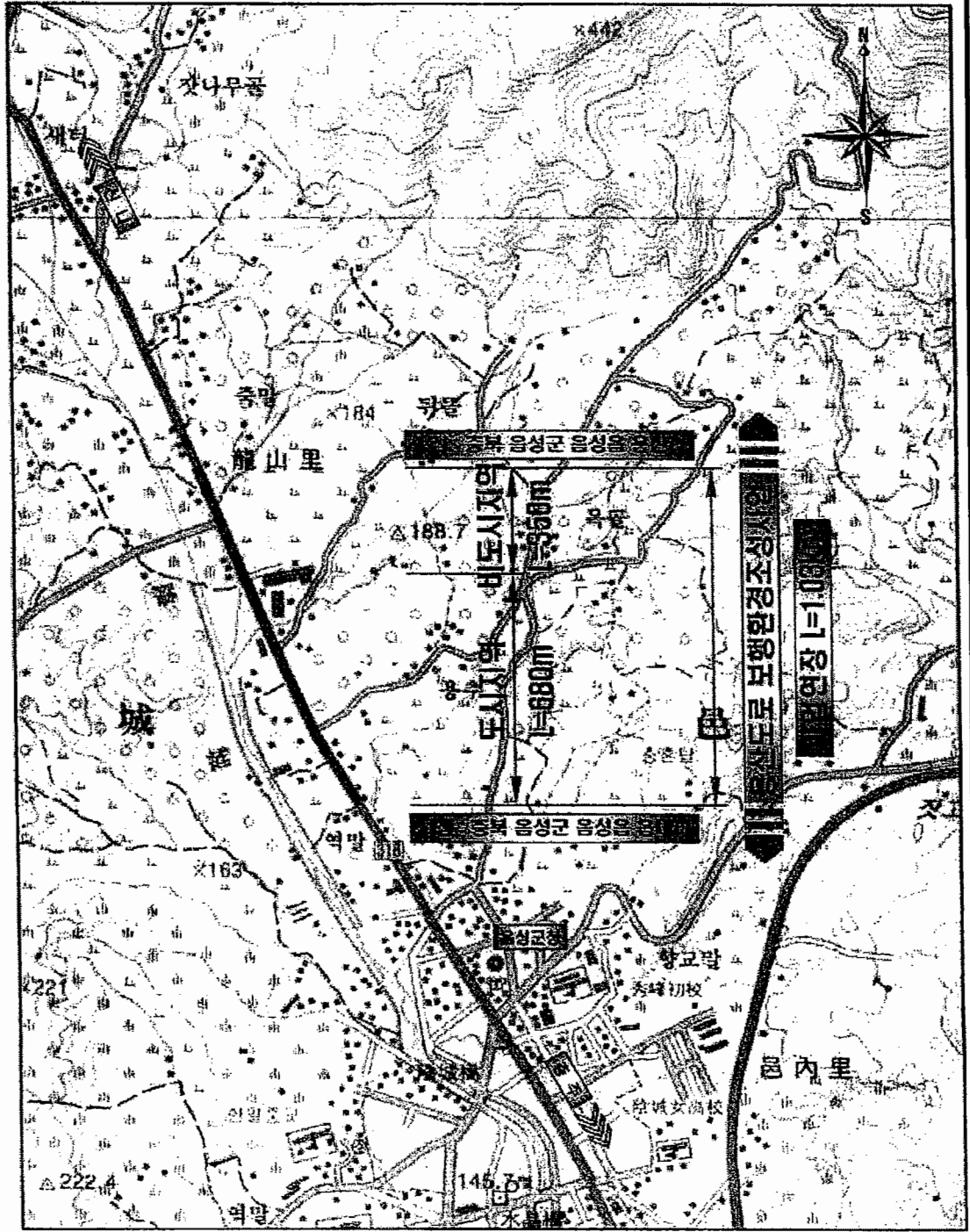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명	구분	공사구간	사업량
지방도 318호	일죽~음성	용산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구간	시점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28-4 종점 :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491	L=1.03Km

2. 사업시행기간 : 2009. 9. ~ 2010. 6(공사준공시까지)

3.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4. 기타사항

위 치 도



**시군행정**

청주시 고시 제2009-1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청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12-3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6호선, 중로2-21호선)사업
- 명 칭 : 지북동 통합정수장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L=471.67m B=15m(A=8,14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북문로 3가)
- 성 명 : 청주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2009. 9. 18 ~ 2010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7.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00-2747)에 비치하고 있음**









청주시고시 제2009-12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청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9-4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4,95호선)사업
- 명 칭 : 강서1동주민센터~강서지구간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 도로확포장 L=297m B=15→20m(A=560㎡)
- 변경 : 도로확포장 L=297m B=15→20m(A=57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북문로 3가)
- 성 명 : 청주시장(도시개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9. 5. 22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00-2747)에 비치하고 있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이해관계 조서

위치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권리사항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1	9-4	대	257	8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	-	-
		9-4	대	257	8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	-	-
	2	7-10	대	107	78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	-	-
		7-10	대	107	78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	-	-
	3	8-4	대	11	11	박정숙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37-1 대림@2-1202	-	-	-
		8-4	대	11	11	박정숙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37-1 대림@2-1202	-	-	-
	4	8-14	대	40	40	박정숙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37-1 대림@2-1202	-	-	-
		8-14	대	40	40	박정숙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37-1 대림@2-1202	-	-	-
	5	8-13	대	38	38	이승영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8-5	강서새마을 금고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20-4	근저당권
		8-13	대	38	38	이승영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8-5	강서새마을 금고	청주시 홍덕구 강서동 20-4	근저당권
	6	426-8	도	43	20	국)건설부	-	-	-	-
		426-8	도	43	20	국)건설부	-	-	-	-
	7	426-1	도	2,972	42	국)건설부	-	-	-	-
		426-1	도	2,972	42	국)건설부	-	-	-	-

8	27-2	도	68	12	승해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85-10	-	-	-	-
	27-2	도	68	12	승해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85-10	-	-	-	-
9	27-14	대	51	8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	-	-	-
	27-14	대	51	8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	-	-	-
10	27-15	대	75	60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서청주농업 협동조합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	근저당권	-
	27-15	대	75	60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서청주농업 협동조합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	근저당권	-
11	26-15	대	15	15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서청주농업 협동조합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	근저당권	-
	26-15	대	15	15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서청주농업 협동조합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	근저당권	-
12	26-16	대	70	70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서청주농업 협동조합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	근저당권	-
	26-16	대	70	70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서청주농업 협동조합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	근저당권	-
13	451-33	잡	7	7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	-	-	-
	451-33	잡	7	7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	-	-	-
14	451-32	잡	7	7	최병기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6	-	-	-	-
	451-32	잡	7	7	최병기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6	-	-	-	-
15	17-28	답	5	5	최병기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6	-	-	-	-
	17-28	답	5	5	최병기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6	-	-	-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16	17-29	답	73	73	여흥민씨승지 공파종중	청원군 강서면 용정리 140	-	-	-	-
	17-29	답	73	73	여흥민씨승지 공파종중	청원군 강서면 용정리 140	-	-	-	-
17	451-4	대	16	7	국)재정경제부	-	-	-	-	-
	451-4	대	16	7	국)재정경제부	-	-	-	-	-
18	17-8	답	57	57	여흥민씨승지 공파종중	청원군 강서면 용정리 140	-	-	-	-
	17-8	답	57	57	여흥민씨승지 공파종중	청원군 강서면 용정리 140	-	-	-	-
19	17-23	답	48	2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	-	-	-
	17-23	답	48	2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	-	-	-
20	-	-	-	-	-	-	-	-	-	-
	8-3	도	26	26	이종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11	-	-	-	-
21	-	-	-	-	-	-	-	-	-	-
	26-10	도	1	1	최석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경성큰마을@102-1404	강서세마을 금고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0-4	근저당권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위치	구분	지번	지장물의종류	구조및종류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관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1	8-14	폐가	블록조, 스테트	20	㎡	박정숙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37-1 대림@2-1202	-	-	내용 없음		
				담장	함석	39.6	㎡	"	"	-		-	
	2	8-13		근생시설	조림식경량철골조	55.9	㎡	이승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5	-	-		
					조림식판넬지붕			"	"	-	-		
					조림식경량철골조			"	"	-	-		
					조림식판넬지붕			"	"	-	-		
					계단	철재	2	개	"	"	-		-
					간판	부착식	2	개	"	"	-		-
					간판	돌출식	1	개	"	"	-		-
					영업권	병천순대	1	식	이승영	"	-		-
				병천순대	1	식	홍정자	"	-	-			
				-	1	식	이승영	"	-	-			
3	27-15		근생(1층)	조적조, 스투브	107.1	㎡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	-	내용 없음		
			근생(2층)	조림식경량철골조	69.3	㎡	"	"	-	-			
				조림식경량철골지붕									
			창고(1층)	경량철기둥 경량철골지붕	44	㎡	"	"	-	-			
			가작(1층)	경량철기둥 경량철골지붕	16.5	㎡	"	"	-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변경 없음	
4	27-15	화장실(1층)	조적조 경량철골지붕	6.6	m <sup>2</sup>	"	"	-	-	-	변경 없음
		소매점	조립식경량철골조 스라브판넬	34	m <sup>2</sup>	"	"	-	-	-	변경 없음
		주택(1층)	조적조, 스라브	102.8	m <sup>2</sup>	"	"	-	-	-	변경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철물점	1	식	"	"	-	-	-	변경 없음
		이사비		1	식	"	"	-	-	-	변경 없음
		사무실(2층)	조적조, 스라브	86.8	m <sup>2</sup>	"	"	-	-	-	변경 없음
		가작(2층)	철기둥, 조립식판넬	23.2	m <sup>2</sup>	"	"	-	-	-	변경 없음
		지하수	-	1	식	"	"	-	-	-	변경 없음
		상수도	-	1	식	"	"	-	-	-	변경 없음
		계단	철재	2	개	"	"	-	-	-	변경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디딤건축사사무소	1	식	김준기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7-8	-	-	-	변경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페리카나	1	식	황규성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7-9	-	-	-	변경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용정건강원	1	식	손호자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7-10	-	-	-	변경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수원분식	1	식	이승자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7-11	-	-	-	변경 없음
5	29-16	근생시설	조립식판넬 경량철골지붕	153	m <sup>2</sup>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	-	-	변경 없음
		창고	조립식판넬 스레트	42.5	m <sup>2</sup>	"	"	-	-	-	변경 없음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내용 없음	
6	29-16	상수도	-	1	식	강병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8	-	-	-	내용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강서해장국	1	식	이재욱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5	-	-	-	내용 없음
		간판	부벽식	1	개	"	"	-	-	-	내용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강서슈퍼	1	식	한영훈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5	-	-	-	내용 없음
		간판	부벽식	1	개	"	"	-	-	-	내용 없음
		간판	돌출식	1	개	"	"	-	-	-	내용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조아라미음식	1	식	진태복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5	-	-	-	내용 없음
		간판	부벽식	1	개	"	"	-	-	-	내용 없음
7	17-29	근생시설	조적조 경량철골지붕	63	m <sup>2</sup>	오병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17-2	-	-	-	내용 없음
		주택	조적조, 스테트	50	m <sup>2</sup>	"	"	-	-	-	내용 없음
		가작	목기등 조립식판넬지붕	18	m <sup>2</sup>	"	"	-	-	-	내용 없음
		영업권및이전비	강서불고기	1	식	"	"	-	-	-	내용 없음
		상수도	-	1	식	"	"	-	-	-	내용 없음
		지하수	-	1	식	"	"	-	-	-	내용 없음
		대형냉장고	-	3	개	"	"	-	-	-	내용 없음
8	27-15	시설이전비	다담건축	1	식	박봉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7-8	-	-	-	추가

청주시고시 제2009-123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청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청 주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69-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66호선)사업
- 명 칭 : 사직 주공2,3단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L=229m B=6m (A=1,474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39-7번지 동암빌딩4층
- 성 명 :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한범순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인가일로부터 ~ 2010년 12월 31일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칩

### 7.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00-2747)에 비치하고 있음.





충주시 고시 제2009-92호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와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12호)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412	8	국지 도로	104	중로1-6 연수동641-4	중로3-49 연수동636-5	일반 도로	-	충주시고시 제1992-36호 (1992.11.10)

나.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2-412호	-	폐 지	-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 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한 도시계획도로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 민원해소 및 사유재산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㉓	주차장	충주시 충의동 8번지 일원	-	증)5,267	5,267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㉓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 설 ○ 위치: 충주시 충의동 8번지 일원 ○ 면적: 5,267m <sup>2</sup>	- 충주종합재래시장 주변의 주차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설함.

(3)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사회복지시설	충주시 호암동 824-10번지 일원	-	중)16,598	16,598	-	층수제한 :3층이하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사회복지시설 (송덕원)	신 설 ○ 위치: 충주시 호암동 824-10번지 일원 ○ 면적: 16,598㎡ ○ 층수제한 : 3층 이하	-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연접부지에 시설을 설치,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도모하고 안락한 안식처를 제공 하기 위함.

2. 충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충주시청 지역개발과(☎850-61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 제천시고시 제2009-75호

## 제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제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제 천 시 장

## 1.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시행 면적(규모)	비고
도시계획시설 (송전선로)사업	제천시 왕암동 412-1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L=0.9Km A=1,692㎡	A=1,954㎡ (전기공급설비)	사용토지 (A=262㎡)

## 2.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충북 제천시 청전동 14-3 한전충북본부 송변전사업처장 (대표 : 김쌍수)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일 : 2009. 12. 20

단양군 고시 제2009-17호

## 천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단 양 군



1.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201번지 일대
2. 시행면적 : 120,982㎡
3.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
    - 공공편익시설지구
      - ▷ 공중화장실 : 당초 235㎡ → 187㎡
    - 상가시설지구 : 당초 5,005㎡ → 5,005㎡(변동없음)
    - 운동오락시설지구
      - ▷ 파3골프장 : 당초 8,107㎡ → 8,155㎡
    - 휴양문화시설지구
      - ▷ 야영장 : 당초 - ㎡ → 4,651㎡
    - 기타시설지구
      - ▷ 녹지 : 당초 81,186㎡ → 76,535㎡
  - 나. 건축연면적
    - 공공편익시설지구
      - ▷ 공중화장실 : 당초 124㎡ → 128㎡
    - 운동오락시설지구
      - ▷ 파3골프장 : 당초 378㎡ → 58㎡
    - 휴양문화시설지구
      - ▷ 자동차야영장 : 당초 43㎡ → 48㎡
4. 천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 : 별도 붙임
5. 관계도서의 열람 장소 : 단양군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개발팀  
(☎ 043 - 420 - 3352)

## 천동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 내용

###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토지이용계획(㎡)			건축연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120,982	120,982	-	5,287	4,976	311	
공공편의시설지구	11,753	11,705	48	287	291	4	
상가시설지구	5,005	5,005	-	2,950	2,950	-	
운동오락시설지구	14,787	14,835	48	1,974	1,654	320	
휴양문화시설지구	5,397	10,048	4,651	43	48	5	
기타시설지구	84,040	79,389	4,651	33	33	-	

### ② 세부시설계획

구 분	토지이용계획(㎡)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			층 수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20,982	120,982	-	16동	17동	5,287	4,976	감) 311	-	-
공공편의시설지구	11,753	11,705	감) 48	4동	5동	287	291	증) 4	-	-
도로	3,704	3,704	-	-	-	-	-	-	-	-
주차장	6,864	6,864	-	-	-	-	-	-	-	-
관리사무소	950	950	-	1동	1동	163	163	-	1층	1층
공중화장실	235	187	감) 48	3동	4동	124	128	증) 4	1층	1층
상가시설 지구	5,005	5,005	-	2동	2동	2,950	2,950	-	2층	2층
상가	5,005	5,005	-	2동	2동	2,950	2,950	-	2층	2층
운동오락시설지구	14,787	14,835	증) 48	7동	6동	1,974	1,654	감) 320	-	-
운동장	5,480	5,480	-	1동	1동	100	100	-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물놀이장(탈의기시설)	-	-	-	1동	1동	100	100	-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유원시설	1,200	1,200	-	1동	1동	1,496	1,496	-	-	-
근린생활시설	-	-	-	1동	1동	1,496	1,496	-	2층	2층
매표소	-	-	-	-	-	-	-	-	-	-
원두막	-	-	-	-	-	-	-	-	-	-
파3골프장	8,107	8,155	-	5동	4동	378	58	감) 320	-	-
야외무대	606	-	감) 606	1동	-	320	-	감) 320	1층	-
원두막	-	-	-	3동	3동	33	33	-	1층	1층
골프장	7,501	8,155	증) 654	-	-	-	-	-	-	-
클럽하우스	-	-	-	1동	1동	25	25	-	1층	1층
휴양문화시설지구	5,397	10,048	증) 4,651	2동	3동	43	48	증) 5	-	-
자동차야영장	5,397	5,397	-	2동	2동	43	48	증) 5	-	-
간이취사장	-	-	-	1동	1동	38	38	-	1층	1층
사각정자	-	-	-	1동	2동	5	10	증) 5	1층	1층
야영장	-	4,651	증) 4,651	-	-	-	-	-	-	-
기타시설지구	84,040	79,389	감) 4,651	1동	1동	33	33	-	-	-
하천	2,854	2,854	-	-	-	-	-	-	-	-
녹지(전망대)	81,186	76,535	감) 4,651	1동	1동	33	33	-	1층	1층

단양군 고시 제2009-18호

## 다리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리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단 양 군



1.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380-16번지 일대
2. 시행면적 : 153,835㎡
3.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 공공편익시설지구

▷ 관리사무소 : 당초 852㎡ → 852㎡(변동없음)

▷ 샤워장 : 당초 -㎡ → 12㎡

- 숙박시설지구 : 당초 1,657㎡ → 1,657㎡(변동없음)

- 운동오락시설지구 : 당초 5,143㎡ → 5,143㎡(변동없음)

- 휴양문화시설지구

▷ 야영장 : 당초 1,322㎡ → 3,688㎡

▷ 수변휴게지 : 당초 6,233㎡ → 6,221㎡

- 기타시설지구

▷ 녹지 : 당초 49,238㎡ → 46,872㎡

나. 건축연면적

- 공공편익시설지구

▷ 관리사무소 : 당초 210㎡ → 210㎡(변동없음)

▷ 취사장 : 당초 119㎡ → 149㎡

▷ 샤워장 : 당초 -㎡ → 12㎡

4. 다리안관광지 조성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 : 별도 붙임

5. 관계도서의 열람 장소 : 단양군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개발팀

(☎ 043 - 420 - 3352)

## 다리안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 내용

### ① 토지이용계획

구분	토지이용계획(㎡)			건축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계	153,835	153,835	-	12,743.26	12,785.26	42	
공공편의시설지구	24,565	24,577	12	519	561	42	
주요관리시설지구	1,657	1,657	-	240	240	-	
관광농원관리지구	5,143	5,143	-	-	-	-	
휴양문화시설지구	64,940	67,294	2,354	11,984.26	11,984.26	-	
기타시설지구	57,530	55,164	2,366	-	-	-	

### ② 세부시설계획

구분	토지이용계획(㎡)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관광시설(동)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	변경후	변경전	변경	변경후	전	후
<b>합계</b>	153,835	153,835		4,597.96	42	4,639.96	12,743.26	42	12,785.26	45동	47동
<b>공공편의시설지구</b>	24,565	24,577	12	519	42	561	519	42	561	11동	13동
관리사무소	852	852		210	-	210	210	-	210	2동	2동
주차장	10,380	10,380		-	-	-	-	-	-	-	-
도로	11,235	11,235		-	-	-	-	-	-	-	-
관광농원관리사	-	-		79	-	79	79	-	79	2동	2동
오수정화조	428	428		-	-	-	-	-	-	-	-
화장실	426	426		111	-	111	111	-	111	3동	3동
취사장	389	389		119	30	149	119	30	149	4동	5동
수원지	855	855		-	-	-	-	-	-	-	-
사위장	-	12	12	-	12	12	-	12	12	-	1동
<b>숙박시설지구</b>	1,657	1,657		240	-	240	240	-	240	3동	3동
방갈로	-	-		-	-	-	-	-	-	-	-
펜션	1,657	1,657		240	-	240	240	-	240	3동	3동
<b>운동오락시설지구</b>	5,143	5,143		-	-	-	-	-	-	-	-
운동장	1,971	1,971		-	-	-	-	-	-	-	-
다목적운동장	880	880		-	-	-	-	-	-	-	-
물놀이장	424	424		-	-	-	-	-	-	-	-
배구장(야외무대)	1,868	1,868		-	-	-	-	-	-	-	-
<b>휴양문화시설지구</b>	64,940	67,294	2,354	3,838.96		3,838.96	11,984.26	-	11,984.26	31동	31동
유스호스텔	14,056	14,056		3,513.96		3,513.96	11,659.26		11,659.26	4동	4동
캠프화이어장	1,411	1,411		-		-	-		-	-	-
야영장	1,322	3,688	2,366	-		-	-		-	-	-
수변휴게지	6,233	6,221	-12	295		295	295		295	26동	26동
산림욕장	17,385	17,385		-		-	-		-	-	-
전망대	102	102		30		30	30		30	1동	1동
관광농원	5,890	5,890		-		-	-		-	-	-
다목적광장	-	-		-		-	-		-	-	-
조경휴게지	948	948		-		-	-		-	-	-
식물원	6,894	6,894		-		-	-		-	-	-
조류사	-	-		-		-	-		-	-	-
자연학습장	1,057	1,057		-		-	-		-	-	-
잔디광장	4,100	4,100		-		-	-		-	-	-
조각공원	4,233	4,233		-		-	-		-	-	-
지압보도	1,309	1,309		-		-	-		-	-	-
목교	-	-		-		-	-		-	-	-
문주	-	-		-		-	-		-	-	-
<b>기타시설지구</b>	57,530	55,164	-2,366	-		-	-		-	-	-
하천	8,292	8,292		-		-	-		-	-	-
녹지	49,238	46,872	-2,366	-		-	-		-	-	-



청주시공고 제2009 - 12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청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8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70호선)사업
- 명 칭 : 분평동 계룡리슈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L=112.2m B=21m (A=3,30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북문로 3가)
- 성 명 : 청주시장(도로과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2009. 12(인가일로부터) ~ 2011년 12월 31일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9. 21 ~ 2009. 10. 12(20일이상)
- 장 소 :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8.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200-2747)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천시 공고 제2009-1181호

제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제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천시청 지역개발과로 서면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8일

제 천 시 장

1. 인가신청 요지

가.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시행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도시계획시설 (송전선로)사업	제천시 왕암동 412-1 일원	유동및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L=0.9Km A=1,692㎡	A=1,954㎡ (전기공급설비)	인 가 일 '09. 12. 20	5,000

나. 사업시행자

○충북 제천시 청전동 14-3 한전충북본부 송변전사업처장(대표 김쌍수)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장소 : 제천시청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043-641-5154)

나. 열람기간 : 2009. 09. 18 ~ 2009. 10. 9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기 타
-----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577호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등)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② 금고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3.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교육위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하며,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본청 금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금고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④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교특회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교육금고 약정은 그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총계	100	
	소계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가-1. 국외평가기관	(6)	
	가-2.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	
	나-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	
	나-2.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	
	나-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	
	소계	15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교육청 대출금리	4	
	소계	25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현황,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의 편리성	10	
	나. 교특회계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10	
	다. 교특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5	
	소계	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6	
	소계	10	
5.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교육기관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 평가항목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1.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한다.
2.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며, 점수편차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단, 항목2와 항목5는 순위간 점수편차가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로 한다.)
3. BIS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인 경우 만점처리 가능
4. 평가점수가 소숫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제25호, 교육과학기술부예규, 2009. 7. 10)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 방법 조정(안 제3조)

- (1)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수의방법에 따를 수 있는 경우 중 "금융기관 이용의 편리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

####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 보완(안 제5조 및 별표)

-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도록 함
-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경쟁방법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보완(안 제6조)

- (1)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정함
- (2) 위원의 분야별 위촉자에 지방의원 및 교육위원을 추가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3) 그 밖에 위원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 라. 금고약정 체결기한 및 약정기간을 변경함(안 제8조)

- (1) 금고약정 체결기한을 약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정함
- (2) 금고의 약정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마.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1) 금고는 교특회계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상·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 (2)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함

#### 바. 기타

-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